

대 법 원

제 2 부

결 정

사 건 2006모55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
재 항 고 인 김명호  
주 거 사  
피 의 자 1. 박홍우  
2. 이상훈  
원 심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자 2006초기302 결정

주 문

재항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,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.
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

정한다.

2006. 11. 13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김용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박시환

주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박일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김능환